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34408 판결 [압류등기말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정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용

변론 종결 2020. 10. 14.

판결 선고 2020. 12. 9.

제 1 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13468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1. 6.접수

제63235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2019. 4. 2. 접수 제1774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변동 내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6. 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4. 4. 22. F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199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압류처분 등 내역

1) 피고는 1992. 11. 5. E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1992. 11. 6. 이에 따른 압류등기를 하였다(이하 위 압류처분을 '제1 압류처분'이라 하고, 그에 따른 압류등기를 '제1 압류등기'라 한다).

2) 피고는 2019. 2. 21. 원고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9. 4. 2. 이에 따른 압류등기를 하였다(이하 위 압류처분을 '제2 압류처분'이라 하고, 그에 따른 압류등기를 '제2 압류등기'라 한다).

다. 압류 관련 체납세액의 내역

1) 제1 압류등기와 관련하여, 2020. 4. 27. 기준 E의 지방세 체납액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

명의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4. 4. 22.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분의 금액은 40,787,190원(1993. 5. 31. E에게 부과된 법인세할 주민세분)이다.

2) 제2 압류등기와 관련하여, 2020. 9. 2. 기준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은 865,940원(원금 840,840원, 가산세 25,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E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당시 납세의무자인 E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에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내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제1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그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룰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법원 역시 그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 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5992 판결 등 참조), 이는 체납처분이 실효로써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요지는, 제1 압류처분은 당시 체납 중이던 E의 조세채무가 위 압류처분 이후 전액 변제됨으로써 실효되었으므로

제1 압류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압류처분의 실효를 전제로 그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로써 제1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제1 압류처분은 그에 관한 E의 체납세액이 전액 변제되어 실효되었고, 제2 압류처분 또한 실효되었으므로, 원인무효가 된 제1, 2 각 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까지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7174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징수법 제5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제1 압류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압류처분이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처분임은 앞서 살펴본 바, 설령 위 압류처분 이후 E의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당연히 위 압류처분이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제2 압류처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거나 실효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할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증거가 없다(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자료는 사실인정에 참조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 2 각 압류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재철, 판사 배관진, 판사 강민수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G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H

철근콘크리트조 평 슬래브 5층 시장

1층 1443.42㎡

2층 1440.36㎡

3층 1508.37㎡

4층 1508.37㎡

5층 1508.37㎡

지하1층 2332.26㎡

지하2층 2574㎡

옥탑 187.1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시장

건물번호 I

면 적 20.7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중랑구 G 대 3300㎡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300분의 11.029. 끝.

